

「바보의 나눔 통장」 특약

제1조 적용범위

“바보의 나눔 통장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한다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『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』 및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은 보통예금 또는 저축예금으로 합니다.

제3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 대상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,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.

제4조 이자지급

- 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의 이자는 해당 기준일에 쉼하여 기준일에 이은 익일 (이하 ‘원가일’이라 한다)에 원금에 더합니다.
 1. 보통예금 : 매년 6월, 12월의 제3금요일
 2. 저축예금 :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의 제3금요일
- ② 제1항의 예금이자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,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영업일에 영업점에 게시하는 이율로 계산합니다.

제5조 수수료 우대서비스

- ① 이 예금은 신규 가입 시 익월 말까지 월 10회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② 은행은 아래에 명시된 이 예금가입자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요건(이하 “우대요건”이라 합니다)의 월별실적을 매월 평가하여 우대요건 충족 시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해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익월1일부터 말일까지 월 10회까지 제공하며, 장기기증희망등록자에 대해서는 우대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(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요건) 하나카드사의 ‘바보의 나눔카드’ 보유
(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 및 우대서비스 내용)

 1.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
 2. 자동화기기, 폰뱅킹(ARS),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,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
 3. 납부자 자동이체 및 타행 자동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
 4. 수표 발행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
- ③ 본 조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는 2017년말까지만 적용합니다.

제6조 기타

은행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계좌수를 계산하여 이 예금의 가입 좌수당 100원을 재단법인 『바보의 나눔』에 연1회 기부금으로 출연합니다. 단, 본항의 기부금은 2017년말까지만 적용합니다.

<부칙>

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